인천 주안역 센트레빌 보류지 입주자모집공고문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0.)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재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의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을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에)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를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를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 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사업주체 사무소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entrevil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지역인 인천광역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지역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규정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들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청약 세대 관람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 1순위에 해당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	일반 1순위 기타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1.09.23.(목)	2021.09.24.(금)	2021.09.27.(월)	2021.10.01.(금)	※ 별도공지 예정	2021.10.12.(화)~2021.10.14.(목)
방법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인터넷청약 (08: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주안역 센트레빌 입주지원센터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9-2)	주안역 센트레빌 입주지원센터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9-2)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구비서류 등 지참방문 ※ 사전서류검수 대상자에 대한 서류접수 방법은 별도공지 예정	주안역 센트레빌 입주지원센터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9-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사업주체 사무소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 8675호(2021.9.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19-2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29층 12개동 총 1,458세대 중 조합원, 소형임대, 일반공급을 제외한 보류지 8세대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 주택	2021-000687	01	047.9816A	47A	47.9816	24.4477	72.4293	26.6670	99.0963	24.6543	1	1	-
		02	047.9558B	47B	47.9558	23.9734	71.9292	26.6526	98.5818	24.4841	1	1	-
		03	059.9698A	59A	59.9698	26.9577	86.9275	33.3297	120.2572	29.5894	1	1	-
		04	059.9712C	59C	59.9712	22.1954	82.1666	33.3304	115.4970	27.9688	1	1	-
		05	059.9824D	59D	59.9824	22.0274	82.0098	33.3367	115.3465	27.9155	1	1	-
		06	074.9245A	74A	74.9245	25.2034	100.1279	41.6412	141.7691	34.0827	1	1	-
		07	074.9691B	74B	74.9691	24.2613	99.2304	41.6659	140.8963	33.7772	1	1	-
		08	084.8145B	84B	84.8145	25.0733	109.8878	47.1302	157.0180	37.4049	1	1	-
	합 계										8	8	-

※ 상기 면적은 준공인가(2021.07.27.)기준으로 향후 소유권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등의 행정절차 진행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안역 센트레빌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1. 07. 27.) 된 주택으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별도의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관람은 제한될 수 있으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동·호수에 대한 평면 및 단지 정보는 홈페이지(https://www.centreville.co.kr/) - 고객서비스 –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대 관람은 한국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 후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가외 발코니 확장 계약(유상)을 함께 진행하고 발코니 확장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하오니,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및 Ⅶ. 발코니 확장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잔금납부일(계약일 이후 60일내 / 2021.12 예정)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타입	주택형	세대수	동	호	분양가격			계약금 (10%)	잔금 (90%)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내)
47A	047.9816A	1	106	207	99,240,000	258,260,000	357,500,000	35,750,000	321,750,000
47B	047.9558B	1	106	503	97,720,000	254,280,000	352,000,000	35,200,000	316,800,000
59A	059.9698A	1	105	502	122,150,000	317,850,000	440,000,000	44,000,000	396,000,000
59C	059.9712C	1	102	502	119,090,000	309,910,000	429,000,000	42,900,000	386,100,000
59D	059.9824D	1	104	504	119,090,000	309,910,000	429,000,000	42,900,000	386,100,000
74A	074.9245A	1	110	504	145,050,000	377,450,000	522,500,000	52,250,000	470,250,000
74B	074.9691B	1	110	503	148,100,000	385,400,000	533,500,000	53,350,000	480,150,000
84B	084.8145B	1	109	501	167,950,000	437,050,000	605,000,000	60,500,000	544,50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47.9816A	047.9558B	059.9698A	059.9712C	059.9824D	074.9245A	074.9691B	084.8145B
약식표기	47A	47B	59A	59C	59D	74A	74B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자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제외 금액임.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추가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유의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금액이 미포함 되어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 (2021.07.27.) 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2021.07.27.) 된 후 분양 아파트로써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1.07.27.)된 아파트이므로,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건물)가 가능하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완료 된 아파트로써 납부일자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1.07.27.)된 아파트로써 중도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 대출을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금 및 잔금은 상기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본 주택의 해당순위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 당점자 중 부적격자르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대화상의 착오로 인해 응답하지 않음.
- 매수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산결과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설정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료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Ⅱ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가점제(7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 추첨제(2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가능한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Ⅲ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2021.09.23(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	2021.09.24(금) 08:00~17:30		
	2순위	2021.09.27(월)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O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
	O		주민등록표 등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며 "상세"로 발급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O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O	출입국 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피부양 직계존속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홍보관 비치)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서류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td><td>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td></tr>
<tr><td>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td><td>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td></tr>
</tabl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10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75%,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100%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5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3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0~50%까지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 일시: 2021.10.01.(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10.12.(화)~2021.10.14.(목) / 10:00~16:00 • 장소 - 주안역 센트레빌 입주지원센터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9-2)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0.01.(금) ~ 2021.10.10.(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0.0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Ⅵ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10.12.(화)~2021.10.14.(목) 3일간(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주안역 센트레빌 입주지원센터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9-2)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사업주체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필수	해당자		
본인계약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	• 사업주체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부적격 당첨 통보자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계약자 본인 발급
	위임장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봄.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등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 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 또는 동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1225-2115	동부건설(주) /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사업주체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향후 은행명 및 계좌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상기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계좌가 적용될 수 있음. (적용 시 추후 공지예정)
- 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외 주민운동시설, 실내 피트니스, 실내골프),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규정에 의함.**

Ⅶ 발코니 확장 계약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1.07.27.)된 아파트로써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에 발코니 확장 시공되어 있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금액 외 별도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유상]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주택형	세대수	동	호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내)
47A	47.9816A	1	106	207	10,500,000	1,000,000	9,500,000
47B	47.9558B	1	106	503	7,120,000	700,000	6,420,000
59A	59.9698A	1	105	502	12,120,000	1,200,000	10,920,000
59C	59.9712C	1	102	502	12,750,000	1,200,000	11,550,000
59D	59.9824D	1	104	504	12,770,000	1,200,000	11,570,000
74A	74.9245A	1	110	504	13,370,000	1,300,000	12,070,000
74B	74.9691B	1	110	503	13,650,000	1,300,000	12,350,000
84B	84.8145B	1	109	501	14,990,000	1,500,000	13,49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전체 주택형의 외부 창호(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전동빨래건조대, 세탁실 선반, 자녀방 붙박이장(1개), 전기오븐(행주도마살균 일체형), 하이브리드쿡탑(가스1구+하이라이트2구),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Push-Pull 콘센트, 욕실 비데 1개소 등이 포함됨

2.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수협은행	1010-1225-2010	동부건설(주)

계약금 (계약서 참고)	잔금 (계약서 참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 유의사항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일정은 계약자 본인에게 고지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었음

•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3. 제공되는 홈IoT 서비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세대 3년간 무상제공 홈IoT 서비스

구분	항목	무상제공기간	무상제공 종료 이후
세대 내	KT 인공지능 TV GiGA Genie2 단말	기본제공	-
	인공지능 홈서비스	최초 입주지정개시일 (21년 7월)로부터 3년	계속 이용 시, 세대별 별도 청약 필요

※ 기가지니2의 서비스 내용은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항목으로 추후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가지니2 서비스 중 일부는 KT인터넷 전화, 올레TV, 지니뮤직 등의 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가능합니다.
※ 기가지니2 서비스 중 홈IoT가전 서비스는 IoT전용 가전에만 이용가능합니다.

■ 인공지능 홈서비스 유의사항
• 인공지능 홈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안역 센트레빌에 제공되는 기가지니2 단말은 입주시 제공되는 품목으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기가지니 단말기의 색깔은 임의 배정됩니다.
• 인공지능 홈서비스는 기가지니와 홈네트워크 연동 서비스로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3년간만 무상 제공되며, 계속 이용 시 서비스료가 발생하며 세대별 별도 청약을 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홈서비스는 월패드(Wall-Pad)의 메뉴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세부 기능 및 서비스의 종류는 입주 시 가능한 기술로 적용됩니다.
• 인공지능 홈서비스는 유 또는 무선 네트워크 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KT IPTV 연동은 불가하지만 인공지능 홈서비스는 이용 가능합니다.
• 타사 IPTV를 사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홈서비스의 TV채널 변경과 음량조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위 ICT 서비스는 추후 브랜드명 또는 서비스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해당 ICT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 조건은 ㈜케이티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Ⅷ 단지 여건 사항

■ 본 아파트는 준공한 단지이므로 현장에서 단지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함.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없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일반도로가 접하여 입주후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예치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 바라며, 이에 대한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함.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및 주차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입주민 전체의 시설물로써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사업지 인근 도로현황 등은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음, 분진, 빛번짐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일부제외).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됨.
  - 욕실 샤워부스 및 욕조, 양변기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창호유리 등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된 경우가 있음.
- P·D, A·D,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 석재, 목재 등은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 주방가구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계약자는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계약 이후 아래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사업지와 인접한 부지와 경사지가 형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바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하자보수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청구 할 수 있으며, 하자 발생부위 보수 후 마감처리는 사용승인도서(실내재료 마감표)에 따른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입주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해야함.
- 분양관련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공통)

- 옥탑구조물, 위성안테나, 통신중계기, 피뢰침, 측뢰, 항공장애등, 소방용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함.
- 단지 내 인접 동 및 인접세대, 해당 사업지 인근 건물(주변 근생시설, 저층 아파트, 간석한신더휴 등) 및 외벽(옹벽) 등에 의해 각 세대별 조망과 향, 일조량 차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단지 인근 도로 및 가로등, 차량의 전조등 등으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 이용, 차량 통행, 상가이용에 따른 소음 및 먼지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변의 위치한 차량출입구와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자 및 세대에 소음, 먼지, 차량의 전조등 등으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단지 및 주변시설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는 자동 폐쇄장치 설치 예정.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단지내 바닥포장 / 지상·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창호 등에 장식물이 부착됨.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111동/112동 인근에 설치되는 어린이공원은 동부건설(주)이 시공하지 않고 사업주체인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한 뒤, 인천시에 무상귀속하는 도시계획시설임

■ 단지(배치)

- 쓰레기집하장(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는 시설임
- 단지 내 공유시설물(DA, 석가산/가든/식재 등의 조경시설물)로 조망, 향, 일조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고 소음, 냄새, 먼지, 가로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은 남측에 단지내 근린생활시설(3F), 남서측에 단지외 근린상가(4F) 및 지상 주차장(8대)가 위치함
- 102동 및 103동은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및 단지내 부 출입구가, 104동 / 105동 / 106동은 지상 주차장(92대)이, 단지 북측에는 주 출입구 / 지하 주차장 출입구 / 키즈스테이션 인근의 차량 회차로가 위치해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소음, 차량 전조등 등으로 인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동측에는 단지외 근린상가(4F), 삼미아파트(5F), 유치원(4F) 등이 위치해 인접한 동호수에는 조망 및 일조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보행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린생활시설(상가) 지붕에 계획(101동에 거주하는 인접세대는 생활권 침해가 있을수 있음)되어 있으나, 입점자들의 운영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시 이삿짐의 이동은 엘리베이터 및 사다리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내외부간의 마감 높이(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내 일부구간에 자연석쌓기 및 옹벽이 설치되었으므로 자세한 위치는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 일부세대는 사업지 인근 도리, 단지내 도로변의 위치한 가로등, 차량의 전조등 등으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 이용, 차량 통행, 상가이용에 따른 소음 및 먼지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주동)

- 각동 옥상에 태양광 모듈(태양 전지판)이 설치되어 인접세대에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옥상에는 이동형 텃밭(플랜터박스)과 벤치가 설치되며,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한 최상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부대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외부 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외부공간, 1층 필로티내,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D/A, 쓰레기 분리수거장, TOP LIGHT(천장),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보관소는 단지내 분산배치되며, 상세 위치는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시기 바라며, 101동 서측에 위치하는 쓰레기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임.
- 단지 커뮤니티(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회의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함.
- 단지 커뮤니티(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회의실 등) 기본 마감과 기본 집기만 제공되고 기기류 및 일부 집기는 제외됨.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 사업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시설물(자동문, 우편함, 무인택배함) 등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심의기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차량출입구에 위치한 경비실 2개소에 설치되며, 사용 및 유지보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고 입주민 전체의 시설물로써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함.

■ 단지(지하주차장)

- 주차장 상부 및 벽체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부는 차량 이동으로 인해 도로혼잡/소음/먼지/차량등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차량 차단장치 설치로 주출입구 인근 도로혼잡/소음/먼지/차량등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구조 및 지상/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단위세대(공통)

- 세내 바닥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경량충격음 4급, 중량충격음 4급)인정 두께 30mm 층간바닥 차음재가 적용되며 욕실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동일동의 계단실 등에 의해 일부실의 조망,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및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드레스실 가구, 확장형 가구, 기타 가구류 등) 및 벽체마감은 현장 공사여건, 인테리어 디자인, 다른 마감과의 간섭 등으로 건축도면과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59C, 59D 타입의 아트월은 가변형벽체 및 단열재 설치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으로 벽걸이형 TV를 설치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발코니/실외기실/다용도실)

- 비확장 선택세대의 개별 발코니 창호 설치시 골조 벽체부분은 단열 미비로 결로가 유발될 수 있으니 해당 부위에 결로방지 단열시공을 권장함.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본 공사시 아파트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등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세대별, 타입별 설치위치 상이함)되며, 본 시공 시 덕트(DUCT) 등이 노출되며,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발코니 배수배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세대에도 사용성을 고려한 비확장 발코니가 있으며, 비확장 발코니의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고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실외기 공간 외부의 난간대는 설치되지 않으며, 미관 및 실외기 성능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및 상부세대가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해 벽체돌출 및 우물천장 깊이가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레인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본공사시 발코니에 우수배관 및 선홈통, 배수구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실외기실에 우수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마감재 및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3~10층)은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됨

■ 단위세대 (창호)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형별 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일부 창호 적용 범위는 상이함.

■ 단위세대(전기/설비)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의 침실, 욕실, 주방 등에서는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일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야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주방터치수전 KIT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가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됨.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함.
- 세대 급수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응축수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함.
- 세대 내의 환기설비는 전열교환기 타입의 1종환기장비가 설치되며 필터는 헤파필터(H13등급)가 사용되며 월패드, 거실온도조절기를 통해 수동조작이 가능함
- 스마트 환경센서는 홈IoT, 월패드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전열교환기를 작동시키는 장치로써, 창문이 열려있거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외기로 인해 작동이 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설비인 전열교환 환기장치는 실외기실 및 발코니 상부에 노출되어 시공 설치되었고, 환기유니트 및 환기용 덕트 및 배관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전열교환 환기장치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 전열교환 환기장치는 겨울철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로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가동을 요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전체 LED 등기구로 설계되었으며, LED 수명의 경과로 인하여 세대 내 등기구를 교체할 경우 해당 기구 내 PCB기판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며 일부(식탁등, 화장대등) 등기구는 제작사에 문의하여 등기구 전체를 교체할 수 있음
• 세대내 방범감지기(동체)는 1층/2층/최상층 세대의 경우 거실 및 모든 침실에 설치되고 1층/2층/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세대는 거실에만 설치됨

■ 기타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조명기구의 사양, 위치, 개소는 평형별, 타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거실 등기구의 크기 및 사양은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IX 기타 계약자 안내

1.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예정일 : 잔금납부일(계약일 이후 60일내 / 2021.12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2.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36, 37, 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 동법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적용됨

3.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소방·통신	전기
회 사 명	㈜동우이앤씨	㈜한국전설엔지니어링	㈜지여이앤씨
감리금액	3,309,130,000	744,518,500	627,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4. 공동주택성능 등급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친환경 성능 평가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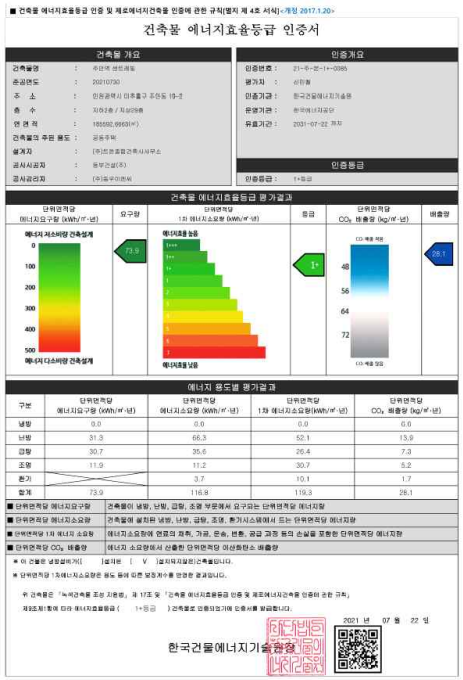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비 고
고기밀 창호	적용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 부위의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2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변압기, 펌프, 전동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를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장치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5.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120171-0004775)	동부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5002)

■ 분양안내 : 02-779-6114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시행.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동부건설(주)